

서울중앙지방법원

판 결

사 건 2019가단5209324 구상금 등 청구의 소
원 고 A 주식회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
피 고 1. B
2. C
변 론 종 결 2020. 2. 4.
판 결 선 고 2020. 2. 18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4,683,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8. 20.부터 2019. 9. 18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2019. 12. 13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, 피고 C는 192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피고 1에 대한 청구
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3. 피고 2에 대한 청구
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장원지

청 구 원 인

1. 피고 B의 구상채무

가. 개인금융신용보험

원고는 2016. 8. 20.경 피고 B과의 사이에, 피고 B이 소외 D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함)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, 보험가입금액을 176,000,000원, 보험기간을 2016. 8. 20. ~ 2018. 8. 30.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 약정을 하고,

2016. 8. 20.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B, 피보험자 소외 회사, 보험가입금액 176,000,000원, 보험기간 2016. 8. 20. ~ 2018. 8. 30.로 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.

나. 주채무내용

위 보험증권을 담보로, 소외 회사는 피고 B과의 사이에 체결된 보험사여신거래 기본약관에 기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금 160,000,000원을, 변제기한을 2018. 8. 30.로 정하여 피고 B에 대출하였습니다.

다.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

(1) 보험금

피고 B은 2019. 2. 5.경 위 대출금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바, 2019. 8. 19. 현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보험으로 인한 대출금채무 164,683,833원을

연체하여, 같은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위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.

(2)지연손해금

위 보험약정 당시 피고 B은 개인금융신용보험가입에 따른 추가약정 제4조 소정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,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%, 그 이후부터는 연 9%입니다(다만, 소외 회사의 지연손해금율이 낮은 경우에는 그 이율을 적용합니다).

라.소 결

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보험으로 인한 지급보험금 164,683,83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인 2019. 8. 20.부터 2019. 9. 18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.

2.피고 C의 양수금채무

가.채권양도양수

피고 B은 2016. 7. 16.경 피고 C 소유의 "강원도 원주시 E아파트 F호"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00,000,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1.의 나.항기재 대출

금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2016. 8. 20.경 위 임차보증금 중 담보한도액을 금 192,000,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에게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6. 8. 24. 피고 C에게 위 질권설정사실을 통지하였으며, 2019. 8. 19.경 위 근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9. 8. 26. 피고 C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.

나.그런데 원고는 위 1.의 다.항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양수한 다음 민법 제3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에게 그 임차보증금을 신속히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인 피고 C는 현재까지 전혀 반환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

다.소 결

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근질권 담보한도액인 금 192,000,000원을 한도로 피고 B에 대한 위 1.의 라.항 기재 구상채권 상당의 양수금 채권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.

3.위 1, 2항 기재 채무의 관계

소외 회사에 대한 피고 B의 이 사건 대출금 상환채무와 피고 C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상의 질권 실행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및 그에 대한 담보로 인한 채무이므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

에 있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입니다(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6다 47677 판결).

4.결 론

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으로 인한 지급보험금 164,683,83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인 2019. 8. 20.부터 2019. 9. 18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되, 피고 C는 위 근질권 담보한도액 192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.

5.관할합의 : 원고와 피고 (1)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.